

제 1443 호  
1989. 7. 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  
편집인: 공 보 관 반 총 남  
진 화: 731-6111-3  
인 색: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35-3337

# 시 보

## 차 례

◎ 조 례

제2489호: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 3

◎ 교육규칙

제339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 위임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 3

제340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 ..... 4

◎ 고 시

제325호: 주택개발제개발금호제1구역제1지구조합정관인부변경인가 ..... 7

제381호: 주택개발제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용암제5구역) ..... 7

(이면계속)

하									
판									

1. 시 공무원용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333호 : 쇠고기팩지고기연동가적및연동가적표고시 .....	8
제337호 :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	10
● 공 고	
제588호 : '89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지원대상업체선정공고 .....	11
제597호 : 주택건설사업자영업경지처분해제공고 .....	12
● 구 고 시	
제6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12
제63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	13
제64호 :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 .....	13
● 사 령	
● 공지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2489호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주택의 건설·공급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용자 또는 보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7.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교육규칙 제339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경부공공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급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

제7조 제1호중 "중학교" 다음의 "특수학교"를 삭제하고, "교사임용" 다음에 "(교감의 의원면직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동조 제2호중 "각급학교의"다음의 "교장"을 삭제한다.

동조 제4호 및 제5호중 "호봉제사정"을 "호봉제회정"으로 한다.

동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6급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6등급이하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임용

동조 제9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한다.

동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5급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5등급이하 기능직지방공무원의 호봉제회정 및 정기승급

동조 제17호중 "호봉사정"을 "호봉회정"으로 한다.

동조 제20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제1호 각급학교의 재교육과 연수 대상자 지명추천

22. 사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원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요구

동조 제22호중 "국민학교"다음에 및 "고등공민학교"를 삽입한다.

동조 제24호중 "(단, 특수학교는 사전승인)"을 삭제한다.

동조 제28호, 제29호,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제24호 각급학교의 학생에 대한

<p>검곡규모 체육대회 출전승인</p> <p>29. 급식학교 지경 및 운영지도</p> <p>32. 제24호 각급학교의 육성회 예산, 결산 보고수리</p> <p>동조 제39호를 삭제한다.</p> <p>동조 제40호중 "유저"다음에 "경영"을 삽입한다.</p> <p>동조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1. 제24호 각급학교의 수용계획(사전승인)</p> <p>동조 제42호중 "(동 물과 구입단가 50만원 이하에 한한다)"를 "(구입단가 20만원 이상의 활용 가능한 물품제외)"로 한다.</p> <p>제43호 내지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43. 제1호 각급학교의 무허가 건물철거</p> <p>44. 제1호 각급학교의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p> <p>45. 제1호 각급학교의 공공용지 전용 허가</p> <p>46. 제1호 각급학교 재산의 차입 및 취득</p> <p>동조 제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0. 제1호 각급학교의 건물 구조 및 용도변경 승인</p> <p>동조 제51호를 삭제한다.</p> <p>동조 제52호중 "중학교"다음의 "특수학교"를 삭제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단 '88. 1. 1이후 발급된 증서에 한한다.</p> <p>동조 제57호 내지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57. 제24호 각급학교의 학생 및 교원동원</p> <p>58. 관용차량 교체승인(동종, 동형 차량)</p> <p>59. 제24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p> <p>60. 제1호의 각급학교 육성회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기부 채납처리</p>	<p>61. 일반사회교육시설 및 학교형태(중학교 교육과정) 사회교육 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p> <p>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교장제외)</p> <p>동조 제5호중 "발급"다음에 "(교장제외)"를 추가한다.</p> <p>동조 제7호중 "(구입단가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 물은 제외)"를 "(구입단가 20만원이상의 활용 가능한 물품제외)"로 한다.</p> <p>동조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5. 교육실습생 배정등의 및 지도감독</p> <p>제9조 제4호중 "(구입단가 10만원 이하에 한한다. 단 동 물은 제외)"를 "(구입단가 20만원 이상의 활용 가능한 물품제외)"로 한다.</p> <p>부 록</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및 그소속기관에 두는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1989. 7. 6.</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p> <p>◎교육규칙 제340호</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

별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 두는지방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표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총 관 표

총 계	6,827
별정직계	6
비상계획관 (5급상당)	1
속 기 사 (6급상당)	1
예비군중대장 (6급상당)	1
전산처리사 (7급상당)	2
사 진 사 (7급상당)	1
전산처리사 (8급상당)	-
3급 내저 9급계	1,996
지방부이사관	1
지방의무부기감	1
지 방 서 기 관	13
지방의무기정	8
지방행정사무관	11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지 방 사 서 관	22
지방의무기좌	7
지방보건기좌	2
지방전기기좌	1
지방토목기좌	1
지방건축기좌	4
지방행정주사	628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지 방 사 서	50
지방전산처리사	1
지방건축기사	23
지방전기기사	5
지방기계기사	6
지방토목기사	8
지방악기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28
지방행정주사보	376
지방사서보	88
지방전산처리사보	4
지방건축기사보	14
지방기계기사보	8
지방전기기사보	14
지방토목기사보	5
지방간호기사보	4
지방보건기사보	83
지방행정서기보	334
지방사서서기	79
지방전산처리원	13
지방건축기원	6
지방토목기원	1
지방전기기원	2
지방기계기원	-
지방보건기원	3
지방보건기원보	1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사서서기보	27
지방전기기원보	-
<b>기 능 직</b>	<b>563</b>
지방통신장 (6등급)	1
지방전기장 (6등급)	4
지방기계장 (6등급)	12
지방기계장 (7등급)	39
지방전기장 (7등급)	8
지방통신장 (7등급)	5
지방기계원 (8등급)	-
지방전기원 (8등급)	-
지방기계원 (9등급)	-
지방조무원 (9등급)	-
지방운전원 (10등급)	494
<b>고 용 직</b>	<b>4,282</b>

별표(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 두는지방공무원정원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u>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공무원정원표</u>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총 율 표		
총 계		6,827
별정직계		6
비상계획관 (5급상당)		1
속 기 사 (6급상당)		1
예비군중대장 (6급상당)		1
전산처리사 (7급상당)		2
사 진 사 (7급상당)		1
전산처리사 (8급상당)		-
3급 내지 9급계		1,996
지 방 부 이 사 관		1
지 방 의 부 부 기 감		1
지 방 서 기 관		13
지 방 의 무 기 정		8
지 방 행 정 사 무 관		112
지 방 행 정 사 무 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지 방 사 서 관		22
지 방 의 무 기 좌		7
지 방 보 건 기 좌		2
지 방 전 기 기 좌		1
지 방 트 목 기 좌		1
지 방 건 축 기 좌		4
지 방 행 정 주 사		628
지 방 행 정 주 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지 방 사 서		50
지 방 전 산 처 리 사		1
지 방 건 축 기 사		23
지 방 전 기 기 사		5
지 방 기 계 기 사		6
지 방 트 목 기 사		8
지 방 약 무 기 사		2

지방간호기사	5
지방보건기사	21
지방행정주사보	376
지방사서보	88
지방전산처리사보	4
지방건축기사보	14
지방기계기사보	8
지방전기기사보	14
지방토목기사보	5
지방간호기사보	4
지방보건기사보	63
지방행정서기보	334
지방사서서기	79
지방전산처리원	13
지방건축기원	6
지방토목기원	1
지방전기기원	2
지방기계기원	-
지방보건기원	3
지방보건기원보	1
지방행정서기보	10
지방사서서기보	27
지방전기기원보	-
<b>기 능 직</b>	<b>563</b>
지방통신장 (6등급)	1
지방전기장 (6등급)	4
지방기계장 (6등급)	12
지방기계장 (7등급)	39
지방전기장 (7등급)	8
지방통신장 (7등급)	5
지방기제원 (8등급)	-
지방전기원 (8등급)	-
지방기계원 (9등급)	-
지방조무원 (9등급)	-
지방운전원 (10등급)	494
<b>고 용 직</b>	<b>4,262</b>



<p><b>◎서울특별시고시제325호</b></p> <p><b>주택개량재개발금호제1구역제1지구 조합정관일부변경인가</b></p> <p>1. 서울특별시고시제712호(86.3.18)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같은고시제677호(88.8.12)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금호제1구역제1지구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도시재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변경된 정관내용은 주택개량재개발금호제1구역제1지구 재개발조합사무소</p>	<p>계시판에 게시한다.</p> <p>1989. 7. 6</p> <p>서울특별시 가. 인가내용</p> <p>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주택개량재개발금호제1구역제1지구조합정관일부 변경인가</p> <p>2) 시행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봉동 134-5번지일대 21,066㎡</p> <p>3) 시행기간 : 88. 3. 18-89. 12. 31.</p> <p>4) 정관일부변경인가년월일 : 89. 7. 1.</p> <p>5) 시행자의 주소·성명 : 성동구 용봉동 134-5 금호제1구역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 윤정현</p> <p>6) 정관일부변경인가내역(일부생략)</p>
<p>변경 전</p> <p>제29조 관리처분 계획 기준1항-6항</p>	<p>변경 후</p> <p>제1항-제6항 동일 제7항 국민주택규모(전용기준85㎡)이하 아파트의 평형배정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대로 희망평형을 배정할 수 있다 분양기준 다액순으로 배정하여야 한다.</p>
<p>7) 변경사유 : 주택개량재개발 업무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배정은 조합원이 희망하는대로 평형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일부변경</p> <p><b>◎서울특별시고시제331호</b></p> <p><b>주택개량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응암제5구역)</b></p> <p>1. 건설부고시제592호(87.11.22)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69호(89.2.21)로 사업계획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공고제412호(89.5.17)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p>	<p>재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응암제5구역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서류는 은평구청 주택과 및 조합사무실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1989. 7. 4.</p> <p>서울특별시 고시내용</p> <p>가. 사업명칭 : 응암제5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p>

나. 시행구역 : 은평구 용암동 197-1의 3필지  
 다. 시행면적 : 6,240㎡  
 라.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간  
 마. 시행자 : 용암제5구역 주택개량채개발조합중앙채운  
 바. 조합의 소재지 : 은평구용암동 89-38  
 사. 시행계획  
 ○동수 : 아파트11-13층 2동  
 ○가구수 : 22평형 206가구  
 ○부대시설 : 노인정, 관리실, 독서실, 기재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놀이터등

◎서울특별시고시제333호

쇠고기 돼지고기 연등가격 및 연등가격표고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제도에 관한규정(농림수산부고시제86-24호 88. 9. 14)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 돼지고기 연등가격 및 연등가격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7. 8.

서울특별시장

1. 쇠고기 연등고시가격(정육 500g 당)5,050원
2. 돼지고기 연등고시가격(정육 500g 당)4,400원
3. 쇠고기 연등가격표 및 산려소값 기준연등가격표 : 별첨
4. 돼지고기 연등가격표 : 별첨
5. 시행일 : 1989. 7. 8일부터

쇠고기 연등가격표

(단위 : 원)

지 육 경 락 가 격 (Kg당)	적 용 연 등 가 격		비 고
	100g 당	500g 당	
5,300	860	4,300	
5,400	880	4,400	
5,500	890	4,450	
5,600	900	4,500	
5,700	920	4,600	
5,800	930	4,650	
5,900	950	4,750	
6,000	960	4,800	
6,100	970	4,850	
6,200	990	4,950	
6,300	1,000	5,000	
6,400	1,010	5,050	
6,500	1,030	5,150	

지육경락가격 (Kg당)	적용연동가격		비고
	100g 당	500g 당	
6,600	1,040	5,200	
6,700	1,060	5,300	
6,800	1,070	5,350	
6,900	1,080	5,400	
7,000	1,100	5,500	
7,100	1,110	5,550	
7,200	1,120	5,600	
7,300	1,140	5,700	
7,400	1,150	5,750	

산지소값 연동가격표

(단위: 원)

산지소값 (순소500Kg)	적용연동가격		산지소값 (순소400Kg)	적용연동가격	
	100g 당	500g 당		100g 당	500g 당
1,300,000	870	4,350	1,720,000	1,090	5,450
1,320,000	880	4,400	1,740,000	1,100	5,500
1,340,000	890	4,450	1,760,000	1,110	5,550
1,360,000	900	4,500	1,780,000	1,120	5,600
1,380,000	910	4,550	1,800,000	1,130	5,650
1,400,000	920	4,600	1,820,000	1,140	5,700
1,420,000	930	4,650	1,840,000	1,150	5,750
1,440,000	940	4,700	1,860,000	1,170	5,850
1,460,000	950	4,750	1,880,000	1,180	5,900
1,480,000	960	4,800			
1,500,000	970	4,850			
1,520,000	980	4,900			
1,540,000	1,000	5,000			
1,560,000	1,010	5,050			
1,580,000	1,020	5,100			
1,600,000	1,030	5,150			
1,620,000	1,040	5,200			
1,640,000	1,050	5,250			
1,660,000	1,060	5,300			
1,680,000	1,070	5,350			
1,700,000	1,080	5,400			

돼지고기 연동가격표

(단위: 원)

지속경락가격 (Kg당)	리 용 연 동 가 격		비 고
	100 g 당	500 g 당	
1,200	230	1,150	
1,300	240	1,200	
1,400	260	1,300	
1,500	270	1,350	
1,600	290	1,450	
1,700	300	1,500	
1,800	320	1,600	
1,900	330	1,650	
2,000	350	1,750	
2,100	360	1,800	
2,200	370	1,850	
2,300	390	1,950	
2,400	400	2,000	
2,500	420	2,100	
2,600	430	2,150	
2,700	450	2,250	
2,800	460	2,300	
2,900	480	2,400	

●서울특별시고시제33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293호(89.6.21)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14-2번지일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법시행

령제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상에 평사료저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하였고 이를 고시합니다.

2. 판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7. 6.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학 교	중랑구 망우동 214-2일대	11,327㎡	봉화국교 설립예정지
변경	"	"	11,633㎡	도면변경없이 면적정정(중306㎡)

○ 도면 : 중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도면과 같음.

<p>◎서울특별시공고제588호</p> <p>'89년도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지원 대상업체 선정공고</p> <p>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재정자금 운 용요강 및 동 집행요령에 의거 '89년 도 중소기업 재정자금 지원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용자금액을 결정하</p>	<p>였기에 공고합니다.</p> <p>1989. 7. 6.</p> <p>서울특별시 1. 용자선정업체 : 19개업체 2. 용자총액 : 567,000천원 3. 업체당용자액 : 30,000천원(단 1개업체는 27,000천원) 4. 자금구분 : 운전자금 5. 용자조건     [ 이자율 : 년10%     상환기간 : 3년(1년6월 거치 1년6월     분할상환) *용자 선정업체 명단 및 용자결정금액 (별첨)</p>
<p><u>용자 선정업체 및 결정 금액</u></p> <p>(단위 : 만원)</p>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용자결정액
1	삼덕상공(주)	김일환	중구 회현동 1가 127	가방, 장갑	3,000
2	수도금속공업사	이영창	구로구 은수동 100-15	분트	3,000
3	(주)살양보일러	박지화	구로구 은수동 100-8	보일러압력용기	3,000
4	삼보실업사	이춘식	동작구 흑석동 95-1	화장지	3,000
5	용성실업	박영균	관악구 봉천동 895-1	의류	3,000
6	삼영산업사	김영권	관악구 봉천동 724-7	단추,의류부자재	3,000
7	한국직물공업사	이인우	강동구 천호동 221-3	화섬편조업	3,000
8	(주)경기실크	이용기	강동구 성내동 19-4	견직물봉제	3,000
9	(주)삼흥사	곽창후	중랑구 증화동 119	자켓	3,000
10	삼왕공사	김박	중랑구 면목3동 566-8	브래지어	3,000

연번	입재명	대표자	소재지	주생산품	용적결정액
11	신영주방설리(주)	이판균	양천구 신정동 200-1	주방기구	3,000
12	태영정공사	최경대	양천구 신정동 200-1	건축부품	3,000
13	한영전기공업(주)	한영수	성동구 성수동2가 317-10	정류기	3,000
14	농주상사	신동권	성동구 도선동 399	건설사지	3,000
15	보인기업사	김태영	성동구 성수2가 317-8	통신기기	3,000
16	금성산업사	김덕화	동대문구 제기동 793-4	자켓, 바지	3,000
17	삼원시계벤드	윤호진	도봉구 창2동 629-3	시계줄	3,000
18	삼공신평공업사	김건혁	구로구 신도림동 270-2	동판	3,000
19	(주)재성특수기자재연구소	한상권	구로구 신도림동 291-189	천정크레인	2,700

⑥ 서울특별시공고제597호

주택건설사업자 영업정지처분해제공고

다음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2,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89. 4. 4-7. 3)한 업체로서, 동처

분 기간이 만료되어 동처분율 89. 7. 4자로 해제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거 공고 합니다.

1989. 7. 6

서울특별시장

가. 다음 (명단 별첨)

주택건설 사업자 영업정지 해제대상 업체 명단

일련번호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지기간	해제일자	비고
1	87-73	(주) 청도건설	이동택	잠원동14-16	89. 4. 4-7. 3 (3개월)	89. 7. 4	
2	87-110	서창건설(주)	김영복	방배동813-7	"	"	
3	87-142	(주) 우리주택	강덕산	방배동851-2	"	"	
4	87-146	(주) 건진실업	김용진	반포동748-3	"	"	
5	87-176	풍진건설(주)	이기우	서초동1476-89	"	"	
6	87-76	송원주택건설(주)	김광용	반포동746-8	"	"	

⑥ 성북구고시제6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성북구청공고제3호(89.6.10)로 공람공고 한바있는 길음동 499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기록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7. 6

성북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성북구 길음동 499주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길음동 499주변도로 확장공사  
 다. 사업의규모: 폭: 8m, 연장200m 도로포장  
 라.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준 공: 90. 12. 31  
 바.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칭: 별첨  
 사.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주소·성명: 별첨  
 아. 위치도및 계획평면도: 생략

1989. 7. 6  
구로구청장

●구로구고시제63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870호 (87.11.30)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을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경리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구분	등급	유형	폭(㎞)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	795	은수동 9	오류동 98-3	180m 구간
변경	소로	2	8	795	"	"	위치조정

나.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구로구고시제64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인가

1. 구로구공고제53호(89.6.5)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고 이에 도시계획법 제25조및 동법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사회복지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7. 5  
구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구로구 구로동 256 - 7일대  
 나. 사업종류의명칭: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다. 사업규모: 대: 1,265㎡  
 건물: 3,305㎡ (지하 1, 지상4층)  
 라. 사업시행자: 구로구청장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89. 12. 31까지  
 바.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별첨토지 및 건물도서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구로구청 건설관리과와 사회복지과에 비치공람중

◎1989. 7. 7 <u>산 하 단 체 임 원 면 직</u> 령제281호	
---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이 재 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시철관리공단 이사장

산 하 단 체 임 원 임 용                      령제282호	
---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이 재 환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 임함. (89. 7. 7 - 92. 7. 6)	신 규
이 균 범	서울시철관리공단이사장에 임함 (89. 7. 7 - 92. 7. 6)	

서울특별시

인 사 상 담 제 운 영

목 적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사례를 전직원에게 홍보하여 인사제도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신장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교충을 해소하기 위함.

1. 운 영

- 상담직원 : 인사업무담당국장, 과장, 계장
  - 내무국장, 시정개발담당관, 인사과장, 인사과 계장
  - 상담 요구내용에 따라 해당과장 또는 계장
  - 구청 총무과장 또는 인사계장 (순번제로 참회)
- 상담대상 : 시산하 전직원
  - 상담인원 -1회 20명(상담신청직원10명, 임의참회직원10명).

영어교육과정 교육생모집

1. 우리 교육원에서는 행정의 국제화시대를 이끌어갈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키 위해 다음과 같이 영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교육기간 : '89. 9. 4 - 11. 25(12주 통원)
- 나. 응시자격 : 서울시 8급이하 공무원
- 다. 선발예정인원 : 30명
- 라.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89. 7. 31 - 8. 8 (근무시간내)
  - 장 소 : 공무원교육원 정문
- 마. 시험방법
  - 일 시 : '89. 8. 18. 10시
  - 장 소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 시험과목 : 듣기, 말하기, 이해하기 (시험당일 응시자는 필히 공무원증을 지참해야 함)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



<p><b>직업, 직종별, 기관별, 직급별, 성별 고려한 적정인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상담제 상담신청직원 우선 참석 (신청서 별지1호서식)</li> <li>- 신청서 접수 - 인사과</li> </ul> <p>○상담내용 및 상담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상담-문·답식으로 설명</li> <li>· 기관별, 개인별 고충상담-접수하여 고충심사절차에 의거 해소</li> </ul> <p>○상담일시: 매주 금요일 15: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성과 분석하여 추후 조정</li> </ul> <p>○상담장소: 소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가함)</p> <p>2. 상담내용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보에 정기적으로 게재 홍보-시보</li> </ul>	<p><b>개계의뢰 양식 (별지2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보에 "인사상담관" 신설</li> <li>· 인사제도 운영사항 문·답식 게재</li> </ul> <p>※기존의 제도 건의사례 해결 우선 게재 (예)-정기적인 시험실시요구, 장기근속자 자동승진요구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충해소 사례 게재</li> </ul> <p>3. 상담처리-일일결산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유지 (관리대장 별지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개선 건의사항 - 심사채택(인) 제안자는 표창</li> <li>· 개별 고충처리 - 고충심사위원회 매월1회 개최 처리</li> <li>· 해소불가 및 장기간 소요고충은 업무담당자 개별 면담 해소</li> </ul> <p>4. 운영시기-1989. 7. 7(금)부터 예정</p>
--	---

(별지제1호)

**정기인사상담 신청서**

①신청일	②신청번호	③소속
④직위(급)	⑤직명	⑥성명
⑦제목		

⑧신청취지 및 이유(관련법규명시 상세히 기재)

**제1회정기 인사상담 실시사항 및 제2회 상담계획**

(제1회 인사상담 실시)

- 일시: 1989. 7. 7오후3시
- 장소: 지하상회실

- 상담자: 시정개발담당관, 인사과장, 인사과 계장 4명 종로구청 총무과장, 용산구 인사계장
- 상담 참석인원: 19명(행정직12, 기술직5, 고용직2)

기관별	계	6급	7급	8급	9급	고용직	비고
계	19	3	5	6	3	2	
구청	10	2	3	2	1	2	
동	8	1	2	3	2		
사업소	1			1			

○ 주요상담 사항: 장기근속자 자동승  
 진등 6건 (시보계제 목록참조)  
 (제2회 인사상담 계획)  
 - 일시: 1989.7.14 오후 3시  
 - 장소: 소회의실  
 - 상담장성인원: 약20명  
 \* 상담신청방법: 장기 인사상달신청서  
 (기허 시달된 양식)를 매주 화요일  
 일까지 인사과에 접수

**승진서열 명부순위의 공개 요망**

문: 승진서열 명부를 공개한다는때 언제  
 부터 어떻게 시행합니까?

- 답: 1. 국가직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평정 규칙이 '89. 7. 1자로 개정 사  
 행되어 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요구  
 가 있을시 본인의 순위를 가르쳐  
 주도록 개정 (단, 근무평정등의 내  
 용은 공개치 아니함)  
 2. 지방공무원은 당해자치단체의 인  
 사규칙이 개정되어야 시행되므로 인  
 사과에서 "명부공개"를 위한 인사규  
 칩을 개정하여 '89. 7. 5법무담당관에  
 법제처신사및 총리실 승인 의뢰하여  
 법무담당관이 개정작업 추진중이므로  
 조속히 개정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  
 며, 동시에 구준칙도 개정승인시달하  
 여 시산하 전기권이 동시에 시행할  
 계획  
 3. 명부를 알려주는 장소는 본청, 사업

소 직원은 인사과, 구청은 구청총무과  
 에서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할 계획

**3년미만 지방조사원의 기능직 특채시기**

문: 동사무소 지방조사원의 상당수는 급별  
 실시되는 기능직 특채시3년미만자로 제  
 외된다고 하는바, 구제방안은 없는지?  
 추후 결원발생시 3년미만이라도 특채  
 가능한지?

- 답: 1.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채용 요건은  
 임용예정 직렬에 3년이상 근무하였  
 거나, 예정직렬의 자격증을 소지한자이  
 어야만 가능함.  
 2. 다만 사무보조로 분류되는 타자원,  
 전담원, 조사원, 안내원등에대하여는 자  
 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자,  
 부기, 주산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에도 특별임용 가능토록 서울시 인  
 사규칙을 개정중에 있음.

**의료직 계급제 실시에 따른 문의**

문: 의료직 계급제는 어떤 방법으로 인  
 재분 시행되는지?

- 답: 1. 단일계급제 시행전(85. 12. 31)부터  
 재직중인 공무원은 당시의 직급으로  
 단일계급제 시행후(86. 1. 1)신규임용된  
 자는 각직렬의 최하위 계급으로 임  
 용하게 됨.

1. 직렬별 최하위 계급  
의 사 : 5급  
약 사 : 7급  
간호사 : 8급

2. 계급 부여시기는 현재 직제 및  
정원관계 자치법규가 개정완료되어  
국무총리실 승인을 득한후 89. 8. 1  
일용해정임.